##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67 발의연월일: 2024. 6. 21.

발 의 자:김원이・박지혜・김영진

허종식 · 김동아 · 김교흥

이재관 • 정준호 • 오세희

허성무 · 김정호 · 장철민

정진욱 · 김한규 · 곽상언

권향엽 의원(16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 보편적 공급 및 요금감면 규정이 부재하며,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은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의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에 따라 운용되고 있음.

그런데 기초연금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감면 서비스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, 해당 당사자 본인이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임을 알지 못하여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직권으로 요금감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0조의3

신설).

법률 제 호

##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3(도시가스요금의 감면)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급규정에 기초연금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를 포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가스도매업자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감면 서비스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20조의3(도시가스요금의 감면)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0조 제2항에 따른 공급규정에 기초 연금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 생활수급자, 장애인, 국가유공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 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를 포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가스 도매업자, 시·도지사 또는 시 장·군수·구청장은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 금감면 서비스의 제공을 직권 으로 신청할 수 있다.